별첨 5 비수도권 및 이전지역(제주) 인재 가점인정 기준

□ 비수도권 및 제주(이전)지역 인재의 정의

○ **비수도권 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해외(외국대학의 국내분교 포함)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지방대학)를 졸업(예정)·중퇴한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자

○ **제주(이전)지역 인재**: 이전지역(제주)에 소재한 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자

※ 대학졸업예정자의 경우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2개 이상의 대학졸업의 경우 응시자가 제출한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판단

□ 비수도권 지방학교 인정기준

○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분교가 아닐 경우에는 '본교' 소재지 기준으로 판단)

* 분교운영 학교(예시): 고려대 세종, 동국대 경주, 연세대 원주(미래), 건국대 글로컬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4)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지역대학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3)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

(4)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 그 외의 비수도권 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 대학원, 사이버대학·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제주(이전)지역 학교 인정기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제주지역에 속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 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의 본교

○「고등교육법」제24조 상의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이원화 캠퍼스)

-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제주)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제주 지역인재에 포함되며, 이 경우 제주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이전지역(제주)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제주)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제주 지역인재로 포함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제주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제주)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 외국학교 및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

□ 그 외의 제주(이전)지역 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 이전지역 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중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 그 외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준용

□ 비수도권 및 제주(이전)지역 인재 여부 입증

○ 증빙서류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입증

- 분교인 경우 분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

<예 시>

※ 제주(이전) 지역 인재 해당여부

< 졸업예정자가 아닌 대학 재학생인 경우 >(대학 소재지와 무관하게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 판단)

고등학교 소재지	
제 주	**제주 외 지역**
이전지역 인재	해당 X

< 본교의 위치와 분교·지방캠퍼스의 위치가 다른 경우 >

○ 본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분교·지방캠퍼스가 제주 지역에 위치한 경우
: 분교·지방캠퍼스는 제주 인재에 해당

○ 본교가 타 지방(수도권·제주지역 제외)에 위치하고, 분교·지방캠퍼스가 제주 지역에 위치한 경우
: 분교·지방캠퍼스는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제주지역의 제주 인재에 해당

※ 본교 학생은 비수도권 인재, 분교·지방캠퍼스 학생은 제주 지역인재에 해당

< 제주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

○ 제주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 대학 졸업: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제주지역 대학 졸업(예정): 해당

< 대학 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

○ 제주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제주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비해당

※ 제주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제주지역 인재에 해당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 >

○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제주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비해당

○ 제주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비해당

< 대학 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 제주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비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제주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비해당

※ 제주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제주지역 인재에 해당

<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 >

○ 제주지역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해당

○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비해당

<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

○ 제주지역 대학 졸업 후 타 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해당

○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제주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비해당